



#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(참 조)

## 제 목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

1. 전자관보 제20359호(2022.10.25.)와 관련입니다.

2.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 방향지시기·등화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「도로교통법」이 개정('22.01.11)된 바 있습니다.

3. 이에 따라 「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(방향지시기·등화 등)을 준수하지 아니한 승합자동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8만원으로 정하는 내용」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('22.10.25)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,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붙임 : 전자관보 사본 1부.

※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[www.tourbus.or.kr](http://www.tourbus.or.kr)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

담 당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전무이사 박태환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2-206호 ( 2022.10.26 ) 접수 ( )  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  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